서울특별시 귀금속·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049 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1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제조업에 한정된 "귀금속・보석산업"의 정의와 지정요건과 혜택이 불분명한 "특화구역"의 정의를 보완하고, 조례안의 기본계획을 도시형소공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계획의 수립을 방지하며, 보조금의 지원대상 관련 규정을 보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제조업에 한정된 "귀금속・보석산업"의 정의를 귀금속・보석산업 관련 유통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, 지정요건과 지정에 따른 혜택이 불분명한 "특화구역"의 정의를 "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 따른 산업・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"으로 수정함.(안 제2조).
-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하고,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제1항)

○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"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"로 함.(안 제6조)

서울특별시 귀금속 · 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귀금속 · 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제1호(종전의제1항) 중 ""귀금속·보석산업(이하 "귀금속산업"이라 한다)""를 ""귀금속·보석산업(이하 "귀금속산업"이라 한다)""으로, "제조업등을 말한다."를 "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·수입·수출·전시·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2항) 중 "귀금속·보석 산업"을 "귀금속산업"으로, "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"을 "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"으로 한다.

안 제3조 중 "시장은"을 "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 "이라 한다)은"으로 한다.

안 제4조의 제목 "(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)"을 "(귀금속·보석 산업 기본 계획의 수립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, "한다."를 "하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"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"을 "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"으로, "비용을"을 "비용의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"귀금속·보석산업(이하 "귀금속산업"이라 한다.)이란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귀금속·보석 산업(이하 "귀금속산업"이라 한다.)이란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·수입·수출·전시·소비 또는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② "특화구역"이란 <u>귀금속·보석 산업</u> 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공간(상가, 거리)으로 <u>서울특별시장</u>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	2. "특화구역"이란 <u>귀금속산업</u> 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(상가, 거리)으로 <u>서울특별시 전략</u>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<u>시장은</u>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</u> 한다)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제4조(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<u>5년</u> 마다 수립하여야 <u>한다.</u> ② ~ ⑤ (생략)	제4조(귀금속·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<u>3년</u>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② ~ ⑤ (조례안과 같음)
제6조(보조금 등) ① 시장은 <u>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</u>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<u>비용을</u>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6조(보조금 등) ① 시장은 <u>귀금속산업 육성시업을 수행</u> <u>하거나 직접 기여하는</u>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 하여 필요한 시업에 소요되는 <u>비용의</u>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귀금속 · 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·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·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① "귀금속·보석 산업(이하 "귀금속산업"이라 한다)" 이란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·수입·수출·전시·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② "특화구역"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(상가, 거리)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귀금 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- 제4조(귀금속·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 야 하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종

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 - 3.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,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
 - 4.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·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5. 귀금속산업의 국내・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- 6.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육성사업 추진)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
 - 2.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
 - 3.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
 - 4.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
 - 5.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

- 6.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
- 7.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- 제6조(보조금 등)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민간위탁 등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 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8조(귀금속주간)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,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)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표창)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